

1. 개정이유

승강기 유지관리 대수의 상한에 대해 그 실적을 인정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시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시기 명확화(안 제50조)

승강기를 설치하여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하는 경우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기존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규정함

나. 유지관리 공동도급 실적인정제 도입(안 제66조)

공동도급 방식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 분담비율에 따라 그 실적을 산정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함

다. 미비사항 정비(안 별표 1)

주택용 엘리베이터의 정의에 대해 해석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 의미를 명확히 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 · 구조문대비표, 별첨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별지 제24호서식”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승강기를 설치(제3조에 따른 교체는 제외한다)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하려는 경우: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
2. 이미 설치된 승강기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

제6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공동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의 승강기 유지관리 대수는 업무 분담의 비율, 지분율 또는 출자비율(이하 “분담비율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그 실적을 산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담비율등을 고려하지 않은 승강기 유지관리대수가 제1항제3호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초과할 수 없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분류기준란 중 “운행거리”를 “운행거리(승강행정을 말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도는 변경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거나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 유지관리 대수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체결된 유지관리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관리주체는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u>별지 제24호서식의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9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u>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제50조(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 ----- ----- ----- ----- ----- --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u> <u>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u> <u>식</u> ----- ----- ----- ----- ----- -----.
<u><신 설></u>	1. <u>승강기를 설치(제3조에 따른 교체는 제외한다)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새롭게 선임하려는 경우: 설치검사에 합격한 날</u>
<u><신 설></u>	2. <u>이미 설치된 승강기의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u>
제66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생략)	제66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u><신 설></u>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공동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의 승강기 유지관리 대수는 업무 분담의 비율, 지분율 또는 출자비율</u>

(이하 “분담비율등”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그 실적을 산정한다. 다
만, 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분담비율등을 고려하지 않은
승강기 유지관리대수가 제1항제3
호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초과할
수 없다.